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공급개요(입주자 모집공고)

-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
-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6.10.23.(금) → [청약홈 청약신청] '26.11.2.(월)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천 배정 세대수 : 5세대(예비 : 35세대)

구분	주택 유형				계
	84A	84B	84D	84E	
추천(예비)	3(15)	2(10)	1(5)	1(5)	7(35)

2. 대상요건

-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3.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6. 10. 12.(월) ~ '26. 10. 16.(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신청 홈페이지 참조(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모든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일부 가점서류 제외)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취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 취하 번복은 불가함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예비포함) : '26. 10. 28.(수) 18:00 (예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발표)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 본 공고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
-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
 - ※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 내용,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
- ☐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
 - ※ 무주택, 청약조건(청약예금 등), 분양가,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
-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
 - ※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
 - *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 **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
- ☐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

- ☐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1호(2023.1.1.시행),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

※ 문의처

기관추천	032-450-1136	청약, 무주택 요건	1644-7445 1599-0001
분양문의	1800-0320	시스템오류	1661-7616

- ◆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단,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 기본 제출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붙임)

*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제출 不要

2.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붙임)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6.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자등록증명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점 서류

1.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평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3.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 발급사이트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4.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5.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중기부)
 - * 성과공제기금 : 중소벤처기업부만 해당. (고용노동부는 해당없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7.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후부터 수상인정.**
8.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9.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인천시)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네이버지도에서 줄자 또는 반경 기능으로 거리 확인)

10. 무주택기간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세대를 달리 하는 배우자의 경우 등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1부(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중기청 담당자가 국토부에 전산 의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 무주택 산정기준

과거 주택소유여부	만30세 이전 혼인여부	무주택기간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①만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	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만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씨리얼 홈페이지 : seereal.lh.or.kr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 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
- ※ (제9호)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 ①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②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①, ② 중 택 1)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뿌리산업 재직자 : 공장등록증명서 - 기술·기능인력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증서)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 - 수상경력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 -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된 배우자)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 ○ ○ ○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최근 15년간 포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면)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u>5년</u>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 수상경력,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의뢰 사업주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혼인신고일, 무주택기간, 수상경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 **[필수]**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